

비영리법인 해산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 즉시
청산인	성명	생년월일 (외국인등록번호)	
	주소	전화번호	
청산법인	명칭	전화번호	
	소재지		

해산 연월일

해산 사유

청산인 대표권의 제한 내용(대표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)

「민법」 제85조제1항 및 「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영리법인의 해산을 신고합니다.

신고인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국가보훈부장관 귀하

신고인 제출서류	1.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. 잔여재산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.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.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.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 회의록 1부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	

처리절차



신고인

처리기관: 국가보훈부